

청주지방법원 2021. 5. 21 선고 2020가단30606 판결 [사해행위취소(일부판결)]

전 문

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인순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최정아, 김대영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5. 21.

주 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2019. 8. 6.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A은 피고 B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9. 8. 6. 접수 제21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8. 6. 27.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 B에 대하여 2019. 10. 16. 기준 20,469,628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이 2019. 8. 6.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은 원상회복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 B은 2019. 8. 26.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0. 2. 27.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2019개회26801호)을 받은 사실, 원고의 채권은 위

개인회생절차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현재까지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지 아니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인 2020. 7. 15.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B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인 원고가 별도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사 김수영

별지